

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8.6.선고 2008고단2785 판결

【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】, [미간행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

외 3인

【검 사】 손지혜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박태석외 1인

【주문】

피고인 1 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,000,000원에, 피고인 2 를 징역 1년 및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3 , 4 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1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에 대하여는 3년간, 피고인 3 , 4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.

압수된 증제1, 2, 3, 5 내지 35호를 피고인 1 로부터 몰수한다.

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 1 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.

[이유]

피고인 1 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○○암연구소 라는 간판을 걸고 환자들로부터 원장님이라고 호 청되며 환자를 진료하며 피고인이 제조한 "K-1"~"K-14" 등의 약을 처방하고, 피고인 2 는 피고인 1 의 아들로서 환자 접수를 받고, 안내를 하며 혈압 및 체중 등을 측정하고, 피고인 3 은 피고인 1 의 처로서 동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한약재로 무알콜 제품인 "K-1"~"K-14" 등의 약을 제조하고, 피고인 4 는 환자들을 소개하여 데려오고 환자들의 혈압 등을 측정하여 주었다. 피고인 2 는 2004. 7. 8.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. 3. 15.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.

1.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. 10.경부터 2008. 6. 14.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○○암연구소 사무실에서 불치병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후 불상의방법으로 제조한 약품명 "K-1", "K-2", "K-3", "K-4", "K-7", "K-9", "K-10" 등을 처방하고 임상일지를 작성하고 가입비 및 치료비 등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명으로부터 함계 46.700.000



워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.

- 2.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. 3. 12.부터 2008. 7. 17.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 공소외 1 주 식회사 의 ○○암연구소 사무실에서 불치병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약품명 "K-1", "K-2", "K-3", "K-4", "K-6", "K-7", "K-9", "K-11", "K-14" 등을 처방하고 임상일지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명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 행위를 하였다.
- 1.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
- 1. 증인 공소외 2 , 3 , 4 , 5 , 6 , 7 , 8 , 9 , 10 , 11 의 각 법정진술
- 1. 공소외 6 , 7 , 8 , 2 , 3 , 4 , 5 , 12 , 13 , 14 , 15 , 16 , 17 , 18 , 19 , 20 , 21 , 22 , 23 , 24 , 25 , 26 , 9 , 27 , 28 , 29 , 30 , 3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
- 1.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
- 1. 수사보고(피해자 공소외 8 진단서 및 입퇴원 사실확인서 첨부)
- 1. 판시 전과 : 범죄경력조회
-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, 의료법 제27조 제1항 , 형법 제30조 (각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),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, 제27조 제1항 , 형법 제30조 (각 의료인이 아니면서의료행위를 한 점)

1. 누범가중

피고인 2: 형법 제35조, 제42조 단서

1. 경합범가중

피고인 1, 3, 4: 각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피고인 2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, 제42조 단서

1. 작량감경

피고인들 : 각 형법 제53조 , 제55조 제1항 제3호 (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, 반성하고 있는 점 등참작)

1. 노역장유치

피고인들: 각 형법 제70조, 제69조 제2항

1. 집행유예

피고인 1 , 3 , 4 : 형법 제62조 제1항 (앞서 든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)

1. 보호관찰

피고인 1 : 형법 제62조의2

1. 몰수

피고인 1 :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

1. 가납명령

피고인들 :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[범죄 일람표 생략]

판사 백승엽